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2회 제1차 정례회(2023. 6. 1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3-86
----------	-------

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맑은환경과)
- 나. 제 출 일 : 2023. 5. 19.
- 다. 회 부 일 : 2023. 5. 25.

2. 제출이유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 근거법령 추가(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기타
 - 1) 입법예고 : 2023. 4. 13.~ 2023. 5. 3. (의견 없음)
 - 2) 행정규제심사·부패영향자율평가 : 원안동의
 - 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조례 개정은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46조의2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및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구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항에 상위법령인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을 추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이는 상위법령인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이 지난 2022년12월30일 개정되고 2023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률의 구조적 정합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소음기·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-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·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작차에 소음허용기준 외 운행차에 대한 소음허용기준¹⁾을 마련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²⁾과 10일 이내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

1) 법 제35조(운행차 소음허용기준)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, 소음기(消音器)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(警音器)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.

2) 법 제38조(운행차의 개선명령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1.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

2.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

3.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

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.

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료

하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³⁾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속과 더불어 신고·고발을 활성화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법률의 위반됨이 없음.

- 따라서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이 개정되어 2023년 7월1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선제적 조치라고 판단되며 시의성이 인정됨.

<표 1.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분야별 지급 현황 (23.5.31.기준)>

(단위 : 건, 천원)

구 분		대기	수질	폐기물	유독물	비고
계	건 수	4				
	지급액	20				
2020년	건 수	2				도서문화상 품권 지급
	지급액	10				
2021년	건 수	2				
	지급액	10				
2022년	건 수	0				
	지급액	0				
2023년	지급액	0				
	지급액	0				

※ 포상금 지급 세부내용 : 매연 과다발산차량 신고

전문위원	신 준 호
주무관	박 철 호

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3) 법 제60조(과태료)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6.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

[관 계 법 령]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

제46조의2(포상금 지급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·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